

# 말레이시아의 제조업분야 투자 안내

사에 한하여 ICA에 의거 인가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 나. 생산 시설의 확장과 제품 다변화에 대한 규정

### (1) 수출을 위한 생산 시설 확장

이미 인가를 받아 제조 활동을 하고 있는 수출 지향 회사는 승인을 받은 제품에 대한 생산 설비를 확장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의 80% 이상을 수출하기 위해 확장을 원하는 회사는 면허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 회사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확장 계획의 세부 사항을 상공부와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통보해야 한다.

### (2) 수출을 위한 제품 다변화

이미 인가를 받은 회사는 전술된 수출을 위한 생산 시설 확장 항의 규정 및 절차와 동일한 조건 하에서 수출을 위한 다변화 계획에 따라 추가 제품 또는 제품들의 다변화를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회사는 다변화 계획을 추진하기 전에 정해진 양식에 따라 다변화 추진에 관한 세부 사항을 상공부와 MIDA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는 제조 인가의 수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 (3) 내수 시장을 위한 생산 시설 확장

주주 기금이 250만 말레이시아 달러 미만이며 이미 인가를 낸 회사는 내수 시장을 위해 승인된 제품 또는 제품들의 생산 시설을 확장할 수 있다.

주주 기금이 250만 말레이시아 달러 이상이며 이미 인가를 받은 회사도 증자에 의해 발생한 증액 자산의 30%를 말레이시아 본토인이 보유한다면 내수 시장을 위한 생산 시설을 확장할 수 있다. 생산 시설 확장에 관한 두 경우 모두 인가를 받은 회사들은 내수 시장을 위한 확장 계획의 세부 사항을 상공부와 MIDA에 통보해야 한다.

### (4) 내수 시장을 위한 다변화 촉진

주주 기금 250만 말레이시아 달러 미만이며 이미 인가를 받은 회사는 면허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도 내수 시장을 위한 제품 다변화를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회사는 상공부와 MIDA에 다변화 계획의 세부 사항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제조

註：海外投資 育成策의 일환으로 말레이시아의 製造業分野 投資를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말레이시아 대사관(794-7205, 795-920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1. 제조허가

### 가. 1975년도 산업조정법

1975년도 산업조정법(ICA)에 의하면 어떠한 제조 활동을 하는 자는 면허관(상공부장관) 으로부터 그 제조활동에 관한 인가를 받게 되어 있다. 이 법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제조부문의 순조로운 발전과 성장을 보장하는 데에 있다.

주주 기금이 250만 말레이시아 달러 이상이거나 75명 이상의 유급 상근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조회

인가의 수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주주 기금이 250만 말레이시아 달러 이상인 회사가 내수 시장을 위한 제품 다변화를 추진하고자 할 경우 해당 회사는 면허권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정해진 양식에 따라 다변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다. ICA의 면제

ICA에 의한 인가 신청을 면제받은 회사는 자산, 고용, 유통망, 수출에 관한 규정 이행도 면제받는다. 개척 자격(Pioneer Status)나 투자세 감면(Investment Tax Allowance) 또는 여타의 혜택이 부여되었으나 ICA에 의한 인가가 면제된 회사도 상기한 규정 이행을 면제 받는다.

## 2. 외국자산에 관한 지침

### 가. 신규 투자에 관한 자산 정책

(1) 외국인 투자자들은, 해당 회사가 그 제품의 80% 이상을 수출하기만 하면, 그 제품이 내수시장을 위해 국내에서 현재 생산되고 있는 제품과 경쟁품목의 여하에 관계없이 자산을 100%까지도 보유할 수 있다.

(2) 첨단기술을 사용해서 제조하는 제품이거나 그 제품이 내수시장의 우선품목인 사업인 경우 외국인 자산 보유 수준은 51%까지 허용된다.

### 나. 기존 회사에 적용되는 자산 정책

(1) 1986년 4월 1일부터 1986년 9월 30일 사이에 인가를 받았으며 사업 수행과 관련된 여하한 투자도 하지 않는 회사도, 1986년 10월 1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 MIDA에 접수된 신청건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수출 조건과 고용 조건을 이행하는 조건 아래 전술한 것과 동일한 자산 관계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

### 다. 자산 소유권에 대한 보증

새로운 자산 지침하에 승인된 회사는, 원래의 승인 조건을 계속 준수하고 원래 사업의 주요 특징을 保持하기만 하면, 확장이나 다변화를 겪을지도 모

른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1990년 이후라도 자산을 재구성할 필요가 없다.

### 라. 투자 보장 협정

말레이시아 정부가 투자 보장 협정을 언제라도 체결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은 말레이시아에서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증진시키고자하는 정부의 소망을 나타내는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미국, 서독, 캐나다, 프랑스, 스위스, 스웨덴, 벨기에, 룩셈부르크, 영국, 스리랑카, 루마니아,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핀란드, 네델란드와 투자 보장 협정을 체결했다.

### 마. 투자 분쟁 해결 협정

외국 투자를 촉진시키고 보호한다는 국가 정책에 따라 말레이시아 정부는 1966년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후원 하에 성립된 투자 분쟁 해결 협정의 조항들을 인준했다.

국가들간의 화해와 조정을 위한 편익은 협정에 따라 워싱턴의 IBRD 본부 건물에 위치한 투자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 센터를 통해 이루어진다.

## 3. 투자장려정책

제조, 농업, 관광, 부문의 주요한 장려 정책은 1986년도와 투자진흥법과 1967년도의 소득세법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장려책은 여러 형태로 세금을 경감해 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말레이시아의 회사에 적용되는 세금은 소득세 35%, 개발세 5%, 개척 자격 혜택을 받은 회사는 이러한 세금이 면제된다. 여타의 혜택은 세금 감면 형태로 나타난다.

### 가. 제조 부문의 장려책

#### (1) 일반적인 장려책

##### (가) 개척 자격

이 장려책에 따른 세금면제기간은 상공부가 정하는 생산일로부터 시작하여 5년이지만 확장이나 재투자를 고무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개척 자격 회사에게는 세금 면제기간을 5년

간 더 연장시켜 준다.

\* 처음 5년말의 고정자산(대지 제외)이 적어도 M\$2,500만에 달하고

\* 상근 말레이시아 고용인이 500명이거나 상공부의 견해로

\* 경제 및 기술개발을 촉진, 고양시키는데 필요한 기타 요구사항들

(나) 투자 세금 감면(ITA)

투자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회사는 사업 승인 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하는 적절한 자본 지출에 대해 100%까지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수출 장려책

전술한 장려책 이외에도 수출 시장용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자는 다음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가) 수출 대부금 상환 계획

제조 제품의 수출을 증진시킨다는 정부의 목적과 맞맞추어 말레이시아의 중앙은행인 네가라 은행은 말레이시아의 수출업자가 국제시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우대금리로 대부해 주는 수출 대부금 상환(ECR) 계획을 실시하고 있다.

(나) 말레이시아에서 제조된 제품을 수출하는 무역 회사에는 본선인도 수출판매가의 5%에 해당하는 수출 감액이 제공된다.

(다) 수출 신용 보험 보험료의 이중 공제

수출업자가 비전통적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재무성이 승인한 회사에 가입된 보험에 대한 수출 신용 보험의 보험료 지급에 이중 공제가 허용된다. 이는 사정 연도인 1986년부터 유효하다.

(라) 산업용 건물 감액(IBA)

회사는 창고로 사용하는 건물, 수출을 위한 제품 적재용 대용량 보관용으로 쓰이는 건물에 대해서 IBA를 받을 자격이 있다. IBA는 처음에는 10%의 감액과 매년 2%의 감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 나. 관세 보호

(관세 보호 정책)

내수 시장의 상당 부분을 공급하는 산업의 제품의 질이 인정될만하고 가격이 소비자에게 타당하다

고 여겨지면 정부는 그러한 자격을 갖춘 산업을 관세 보호를 통해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다. 관세 보호를 부여함에 있어 국내 원자재의 이용도, 국내에 있어서의 부가가치 실현도, 해당 산업의 기술 수준도 고려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관세 보호를 받고 있는 산업에 대한 장기 관세 보호의 필요성은 그 산업의 요구와 소비자의 복지가 최적 수준에서 양립할 수 있도록 때때로 재평가된다.

관세 보호에 대한 신청은 규정된 양식에 따라 M-IDA에 해야한다.

## 다. 직접적인 원자재/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

원자재/부품에 부여되는 관세 면제 수준은 완제품이 국내 시장에 판매되느냐 수출되느냐에 달려 있다.

(1) 수출용 상품 제조

수출 시장용 최종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의 경우 수입된 원자재에 대한 관세면제는 통상적으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부여된다.

(가) 국내에서 제조되지 않거나 제조되어도 인정될 만한 질에 미달하고 가격이 적당하지 않은 직접적인 원자재/부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 관세가 완전히 면제된다.

(나) 부가가치가 적용되는 경우 부가세의 완전 면제

(2) 내수용 상품의 제조

제조회사가 제조 인가에 명시된 자산 조건에 순응하거나 자산 조건에 연장의 혜택이 부여되지 않는 한 해당 회사의 신청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라. 직접적인 원자재/부품에 대한 국내소비 면제

1977년도 국내소비세(환불) 명령에 따라 그 명령에 규정된 상품을 제조, 수출하는데 사용된 국내소비세를 지불한 원자재에 대해서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인가된 국내에 있는 국내소비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을 상품 제조에 필요하여 자유 무역 지역에 있는 공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말레이시아로부터 상품을 수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마. 기계와 장비에 대한 관세 면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제조 공정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거의 모든 기계와 장비는 수입 관세, 부가세, 판매세 납부 의무가 없다. 이러한 기계의 수입량을 제한하던 규정은 폐지되었다. 아직도 수입 관세의 적용을 받는 기계와 장비는 일정한 조건과 기준이 만족되면 면세 혜택을 고려할 수 있다.

#### 바. 관세의 환불

(1) 관세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상품 곧 수출되는 상품 제조에 부속 또는 재료로 사용되는, 관세를 납부한 모든 물품들은 관세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포장 재료는 환불받을 수 없다.

#### 사. 자유무역지역, 러부언도, 그리고 랑카위로 수출된 상품

보세 지역으로부터 관세가 환불되는 자유무역지역으로의 상품의 이동은 수출로 간주된다. 따라서 보세 지역에서 제조된 이러한 상품은 관세의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보세 지역으로부터 러부언 섬과 랑카위로 이동된 상품은 관세의 환불에 관한 한 수출로 간주되게 된다.

#### 아. 관세 환불 요구의 검증

환불 요구의 절차와 지급을 지연시키지 않기 위해서, 지급이 이루어진 후에 공장의 모든 재고품 기록에 대한 검증이 행해진다.

1967년 관세법 99조항에 의하면, 제조업자는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원자재의 양을 확인하기 위해 관세청이 요구한 회계장부를 보존해야 한다. 그러한 기록을 보존하지 못하면, 현재와 미래의 환급요구 절차가 순조롭게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처음에 승인된 관세 환급 편이가 취소될 수도 있다.

#### 자. 이중 세금협정

말레이시아는 방글라데쉬, 싱가포르, 일본,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리랑카, 영국, 벨기에,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캐나다, 뉴질랜드, 인도, 중국, 동독, 서독, 폴란드, 호주, 타일랜드, 한국, 루마니아, 필리핀 그리고 파키스탄과 쌍무 이중 세금 협정을 맺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네덜란드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협정을 가조인했으며, 브라질, 소련, 몰타 그리고 터키와 동일한 협정을 맺기 위해 협상하고 있다.

#### 차. 세금 면세 조항

폐기된 1986년도 투자장려법에는 말레이시아가 면제해 주는 세금과 관련하여 본사 소재국이 제공하는 차관에 관한 조항이 있다. 그 폐기된 법률과 혜택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1986년도 투자증진법에서 말레이시아와 협정을 맺은 나라들이 세금 면제의 혜택을 받으며 계속 차관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 4. 기술의 이전

#### 가. 정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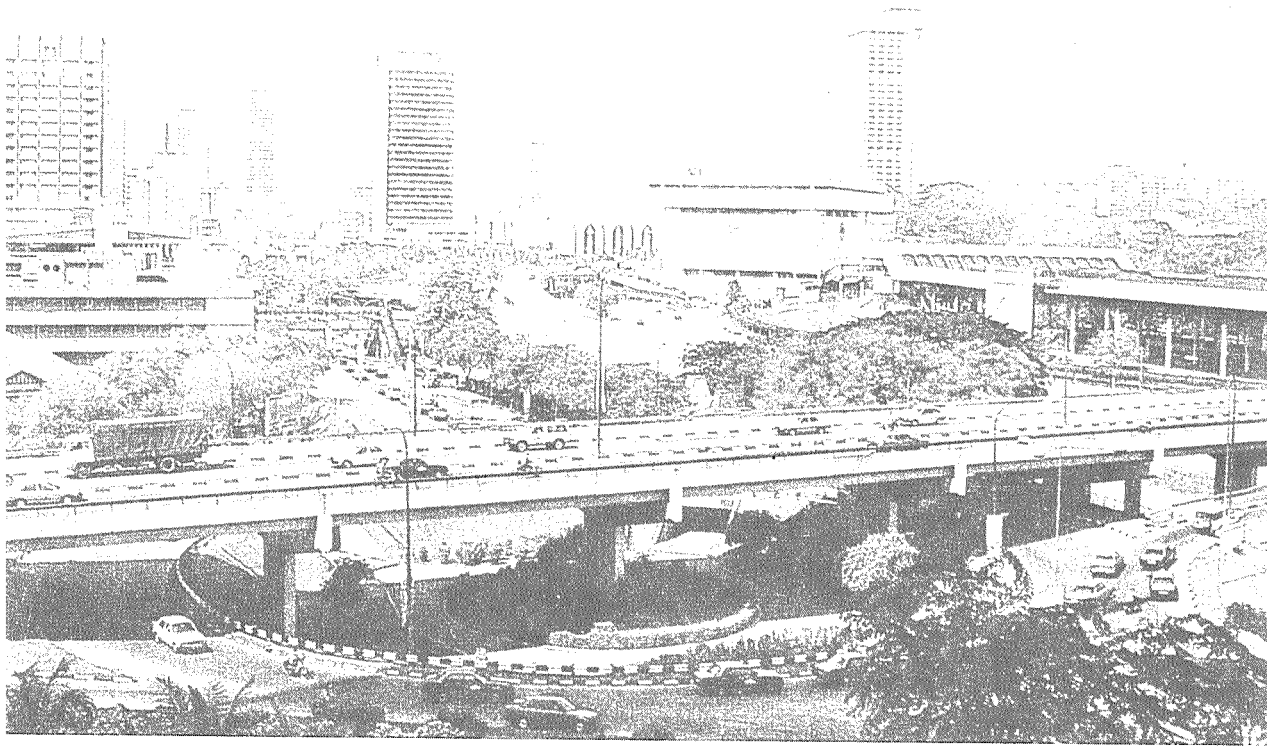
상공부에서 인가된 모든 제조사업은 외국인 동업자들과의 계약을 맺기 전에 먼저 상공부의 서면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는 다음 사항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 (1) 그 계약이 국내 동업자에게 불공평하며 부당한 제한이나 불이익을 가해서는 안된다.
- (2) 그 계약이 국가이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 (3) 사용료 지급은(적용될 경우) 이전될 기술의 수준과 비례해야 한다.

#### 나. 계약의 유형과 특성

기술이전 계약에는 특정한 공정, 제법 또는 제조 기술 등에 대한 사용권이(특허를 받건 안받건 간에) 포함된다. 이에겐 공장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여타의 지식이나 전문 기술 그리고 여러가지 기술원조와 지원 용역도 포함된다.



#### 다. 기술이전을 위한 지침

기술이전에 관한 계약은 아래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 (1) 기술의 내용과 기술이나 공정의 주요한 특징들
- (2) 예상 생산품
- (3) 생산품의 질과 명세서
- (4) 기술 지원과 용역의 명세와 그것들이 제공되는 방법

#### 라. 말레이시아의 산업자산 보호

##### (1) 1983년도 특허권법

말레이시아 당국은 산업자산 분야에서 현지인과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해 적절한 보호책을 제공한다. 말레이시아에서의 특허권 보호는 1983년도 특허권법령과 1986년 10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1986년도 특허권 규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위에서 말한 법령과 규정하에서, 특허권 신청은 말레이시아에서 직접할 수 있으며, 폐지된 관련 법률 하에서는 특정지역에만 등록되던 것과는 반대로 말레이시아 전역에 효력을 발생한다. 다른 국가의

법률조항과 마찬가지로 발명은 새로운 것이고, 자명한 것이 아니며, 산업적으로 응용할 수 있으면 어느 것이나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이 법령에 의하면 특허권이 허가된지 15년 후에 기간이 만료된다.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물려주며, 사용허가계약을 맺을 권리 등, 특허가 인정된 발명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또한 가까운 시일안에, 국내의 산업자산 분야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파리협정에 가입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말레이시아의 산업자산법은 국내인이나 외국인을 동등하게 취급한다.

##### (2) 1976년도 상표권법령

말레이시아에서의 상표권은 1976년도 상표권법령과 1983년도 상표권 규정에 의해 보호된다. 선진공업국들의 법률을 본따 만든 위 법령은 이 나라에 등록된 상표권을 효과적이고 적절히 보호해 준다. 어떤 상표권이 등록되면, 그 상표권이 소유자나 허가를 받은 사용자 외에는 어떤 개인이나 기업도 그것을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을 어기면, 권리침해로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상표권의 등록이 정기적으

로 갱신되어 계속 사용되면, 상표권 보호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 (3) 1987년도 저작권법

말레이시아에서 저작권 보호는 1987년도 저작권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동법은 1969년도판 저작권법의 개정판이다.

1987년12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 이 개정판은 저작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작품뿐 아니라 저작권에 관련된 주변의 많은 발행물에 포괄적인 보호를 해준다. 이법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저작권과 관련되는 품목의 분류, 보호범위 및 보호에 따른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 보호기간은 25년에서 50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이 법의 특징으로는 강제규정을 들 수가 있는데, 이는 저작권 침해라고 생각되는 복제품 혹은 고안을 수사하고 몰수하는 권한이다. 특수팀이 있어 이 법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

외국작품들이 원산지에서의 첫발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말레이시아 내에서 만들어져 발간될 경우 역시 저작권이 보호된다.

향산업에 FTZ시설을 제공하는 목적은 그 산업체들이 원자재와 부품, 기계, 장비를 수입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세관통제와 절차를 받게 하는데 있다.

현재 9개의 자유무역지역이 설정되어 있다. 즉 페낭, 멜라카, 세랑고르, 조오르주에 위치한 바안 레파, 프라이, 무클람, 프린깃, 부킷 바루, 타농클링, 선게이웨이, 울루클랑, 테록 판글리마 가랑과 파시르 구당이다.

### 다. 인가된 보세제조 창고(LMW)

산업분산을 장려하고 회사들이 주로 수출용 상품을 생산할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유무역지대설정이 실제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곳에서는 당국에서 인가된 보세제조창고의 설립을 허용해 왔다. 이러한 시설에는 자유무역지대에 있는 공장과 유사한 편익이 주어진다.

외국작품에 대한 저작권보호는 국내의 그것과 비슷하다.

1987년도 저작권 법에는 동법을 국제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규정 또한 명시하고 있다.

## 5. 투자를 위한 편의시설

### 가. 공업단지

말레이시아에는 특별히 산업적인 필요에 따라, 국가 전역에 걸쳐 설립된 105개의 공업단지가 있다. 이러한 단지에는 도로, 용수, 전기, 통신시설과 같은 기본적인 사회간접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 나. 자유무역지역(FTZ)

이것은 주로 수출용 상품을 생산하거나 조립하는 제조산업을 위해 특별히 계획된 지역이다. 수출지

## 6. 부록(장려되는 생산활동과 생산품 목록)

○전자·전기제품의 구성성분과 그 부품의 제조

- (1) 컬러 텔레비전과 그 부품
- (2) 오디오나 비디오 카세트 녹음기와 그 부품들
- (3) 튜너
- (4) 컴퓨터, 컴퓨터 단말기와 그 부품
- (5) CAD, CAM 또는 CAE와 그 부품
- (6) 모든 종류의 제어기
- (7) 변복조(變復調) 장치
- (8) 셀룰러 라디오, 위키-토키를 포함한 전화기
- (9) 통신기와 그 부품
- (10) 인터컴
- (11) 광섬유품과 그 부품
- (12) 계산기
- (13) 압전기 주파수대
- (14) 소리와 정보종합기
- (15) 이어폰
- (16) 보청기
- (17) 마이크로폰
- (18) 연기탐지기, 화재경보기, 전자계산기
- (19) 자동요금수집기
- (20) 자동교통조정기
- (21) 자동판매기
- (22) 자동주차미터기

- (23) 자동금전출납기
- (24) 컴퓨터저울
- (25) 현금등록기
- (26) 원격계측기
- (27) 텔렉스기
- (28) 사진복사기와 그 부품
- (29) 로봇과 로봇공학
- (30) 전기잔디깎기
- (31) 오븐
- (32) 세탁기와 그 부품
- (33) 진공청소기와 그 부품
- (34) 바닥 청소기
- (35) 면도기
- (36) 헤어 드라이기
- (37) 장식조명
- (38) 산업용광로와 그 부품
- (39) 버튼전지
- (40) 재장전되는 전지나 배터리
- (41) 방전튜브
- (42) 안테나
- (43) 스피커
- (44) 마이크로 스위치
- (45) 전력공급기
- (46) 수정
- (47) 감지기와 변환기
- (48) 태양전지
- (49) 모든 종류의 모터
- (50) 계전기(繼電器)
- (51) 전류저항장치
- (52) 축전기
- (53) 인쇄회로기
- (54) 인쇄회로기판 연결장치
- (55) 전하결합소자 장치
- (56) 디스플레이-전기투명플래즈마, 액체수정
- (57) 세라믹회로기판이나 반도체소자 봉입용기
- (58) 고압기억저장장치
- (59) 금과 알루미늄합성선
- (60) 헤더와 캔
- (61) 납땀
- (62) 마그네트나 페라이트심
- (63) 반도체, 웨이퍼 합성회로형
- (64) 모든 종류의 반도체
- (65) 모든 종류의 반도체 검사기
- (66) 전자마줄
- (67) 마그네틱 헤드
- (68) 마그네틱 웹브와 펜케익
- (69) 정전(靜電) 전환기
- (70) 냉장고 압축기
- (71) 전선벨트
- (72) 타이머 스위치
- (73) 온도조절장치
- (74) 동력장치
- (75) 전기 도어벨
- (76) 방폭스위치 기어
- (77) 전기취사도구
- (78) 전기발출
- (79) 비디오 카세트 테이프와 카세트 케이스
- (80) 수정 반제품
- (81) 실리콘 웨이퍼
- (82) 계산기 디스케트
- (83) 전기팬
- (84) 에어컨, 그 부품 및 악세사리
- (85) 트랜지스터 라디오
- (86) 에어컨용 압축기
- (87) 무선도어벨
- (88) 태양열 옥외전등
- (89) 디지털 암호 작성기
- (90) 디지털 암호 해독장치
- (91)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 (92) 지그와 고정시키는 도구
- (93) 콤팩 디스크 플레이어와 그 부품
- (94) 전기나 전자제품용 실리콘 탄력스위치
- (95) 증기다리미
- (96) 납작한 PVC 엘레베이트 전선
- (97) 불에 강한 전선